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7. 9 선고 2024가단8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4. 6. 4.

판 결 선 고 2024. 7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45㎡를 인도하고,

나. 공동하여 5,000,000원 및 2023. 12. 4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 원고의 주장 전체에 비추어 직권으로 “연대하여”를 “공동하여”로 정정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홍사빈

별지